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2026년도 쌍용건설(주) 현장내 협력회사(하청)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을 전국 모든 현장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쌍용건설(주)와 교섭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
노동조합 대표자	조승호	이주안	도기범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6.03.10	2026.03.10	2026.03.11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충청남도 천안시
조합원 수	198명	300명	20명
교섭안전	- 산업안전 의제(중대재해 예방, 건강장해 예방, 노사 안전 상생 등) - 다단계 불법하도급 예방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교섭요구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산업건설노동조합
노동조합 대표자	김대식	김경수	이승조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6.03.12	2026.03.12	2026.03.13
소재지	대구시 달서구	경기도 오산시	서울시 마포구
조합원 수	기재 없음	1,000명 이상	19,000명 이상
교섭안전	기재 없음	- 산업안전 - 임금 및 단가 - 작업환경	- 건설현장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관련 사항 -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 건설현장 운영 관련 개선

교섭요구 노동조합	[한국노총] 섬유건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일반노동조합	
노동조합 대표자	오영봉	정홍석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6.03.17	2026.03.26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대전시 중구	
조합원 수	80명	420명	
교섭안전	- 동일노동 동일임금 - 현장 안전 강화 - 노조 차별 금지	- 중대재해예방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강화 - 폭염 혹한 등 작업환경 대응 - 적정임금 보장 및 임금체불 방지 - 재하도급 금지 및 관리 강화	

2. 공고기간 : 2026. 08. 10 ~ 2026. 08. 17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3.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10조의2)

1) 노동조합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 교섭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해당 노조가 교섭요구 당시에 제시된 교섭안건 중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권이 미친다고 판단한 근거 (노동위원회 결정문 등)”가 있는 경우 해당 교섭안에 대하여 교섭할 예정입니다.

※ 위 교섭요청 노동조합 중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한국산업건설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19,000명이상 또는 1,000명 이상으로 기재하였는데, 조합원 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후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자율적 교섭 창구 단일화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중 조합원 수를 명확히 기재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쌍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인수

